

청도를 새롭게!
군민을 힘나게!

문서번호	농업정책과 - 26805
보존기간	5년
시행일자	2023. 7. .
공개여부	여

담당자	담당	과장	소장	부군수	군수
김자원	이재아	김동호	이은희	장성기	김경숙
협조	기획 담당 <u>주도현</u> 예산 담당 <u>유경원</u> 여성 청소년 담당 <u>구미주</u>		기획 예산 담당 관리 <u>김기준</u>		

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·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: 당연직 비상임이사 “산업경제건설국장” 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 으로 변경



청도군
(농업정책과)

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·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■ 조례 개정 필요성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2022.12.30.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· 운영 조례 복일치 부분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

■ 주요 내용

-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라 「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 · 운영 조례」 (제9조의3)제1항 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“산업경제건설국장” 을 삭제하고,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 으로 변경
- (안 제9조의4)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“비상임이사” 를 두는 경우를 “비상임 감사” 로 변경

■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·운영 조례 불일치 부분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
- 나.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9조의3(이사)제1항 비상임이사 변경
 - (현행) 산업경제건설국장 → (변경) 농업기술센터소장
- 나. 제9조의4(감사)제1항 용어 변경
 - (현행) 비상임이사 → (변경) 비상임감사

3. 개정안 및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: 지방공기업법 제49조(설립),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6조(소싸움경기의 시행)
- 나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: 2023. 9월 중 예정
 - 2) 성별영향평가 : 2023. 8월 중 예정
 - 3) 예산관련: 별도비용 해당사항 없음,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청도군 조례 제 호

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제1항 중 “산업경제건설국장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조의4제1항 중 “비상임이사”를 “비상임감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의3(이사) 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<u>산업경제건설국장</u> , 기획예산담당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9조의3(이사) ① ----- ----- <u>농업기술센터소장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4(감사)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한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<u>비상임이사를</u>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 ④ (생략)	제9조의4(감사) ① ----- ----- ----- 비상임감사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
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청도군공영사업공사 설치·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을 위함으로, 본 의안의 입안에 따른 재정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.

4. 작성자
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김덕곤 (안)
